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. 7. 23 선고 2020가단7747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
담당변호사 권순명

피 고 1. A
2. B
3. C
4. D

변론 종결 2020. 7. 2
판결 선고 2020. 7. 23

주 문

1. 피고 A, E, C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조립식 판넬조 단층 건물 약142㎡, 같은 도면 표시 ⑤, ⑥, ⑩, ⑪,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조립식 판넬조 단층 건물 약 50㎡, 같은 도면 표시 ⑥, ⑦, ⑧, ⑨, ⑩, ⑥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ㄷ)부분 조립식 판넬조 단층 건물 약 50㎡, 같은 도면

표시 ⑫,⑬,⑭,⑮, ⑫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ㄹ)부분 컨테이너 창고 약 18㎡를 철거하라.

2. 피고들은 공동하여,

가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(16), (17), (18), (19), (16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약 48㎡를 철거하고,

나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
3.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, E,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, 원고와 피고 D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.

5. 제1,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7, 239㎡ 2층, 별지 도면 표시 (ㄱ),(ㄴ),(ㄷ), (ㄹ),(ㄱ) 부분 지상건물을 각 철거하고, 위 토지 7,239㎡를 인도하라.

이 유

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이 원고 소유인 사실, 피고들이 2006년경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무허가 건물 을 건축하고 주변 임야를 경작해온 사실, 위 사실을 적발한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촉구 및 변상금 부과 통지를 한 사실,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실(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. 1. 7.자 2019카단102925결정, 2020. 3. 9.자 2020카단100585결정)은 갑 제1내지 6호증(가지 번호 포함. 이하 같다)의 각 기재에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· 사용하 고 있으므로,

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주문 제1,2항 기재 각 지상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한편,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도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의 철거를 구하고 있으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, E,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,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현진

별지